제35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6. 1. 17(금) 08 : 00~09 : 25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의료법인 증여세 부과 대책

병원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의료법인에 증여세까지 부과될 경우 대부분의 의료법인 병원들이 도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본회가 증여세 부과 유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선 해당 병원장 회의를 '86. 1. 21(화) 15 : 00시에 개최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다.

(승인사항)

1. 의료보험 세미나 개최 승인

이 세미나를 보사부 후원없이 병협 단독 주최로 개최하며 국회, 정부, 정당, 언론계, 학계, 관련단체 및 병원계가 공동으로 참여케 하고 세미나 제목당 20분간 발표하며 40분간 토론하는 패널 디스커션으로 진행토록 하는 세미나 개최 수정계획을 승인. 그러나 이 세미나의 발표나 토론과정에서 국공립병원은 세제 및 공과금상의 특혜 뿐만아니라 병원 부지 건축비 및 의료장비 구입대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비해 경영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자료를 협조키로 하다.

제36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6. 1. 24(금) 08 : 00~09 : 2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의료법인 증여세 유보 건의 후속조치

본회가 이같은 건의서를 정부 관련부처(감사원, 경제기획원, 재무부 및 보사부 등)에 제출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고 있으나, 의료법인 증여세부과 대상병원이 대부분 농어촌에 위치한 의료취약지역 민간 병원에 해당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병원 도산이 불가피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뿐만아니라 외국차관 및 융자금으로 의료장비를 도입한 관계로 상환능력이 없어 상환할 주체가 멸실되어 채무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해당지역 의료보호 및 의료봉사업무의 공백이 초래되는 점 등을 중시하고 백낙환 회장이 민정당 정책회의 의장, 정무장관 및 보사부장관 등 관련기관 고위층을 금명간 방문하여 본회 건의사항을 재설득 시키기로 하다.

2. 정신보건법안 개정 대책

본회가 정신과 학회측과 이 법안 개정을 위해 의견교환을 한 바 양 단체간에 별로 큰 견해 차가 없으므로 향후 양 단체가 협의하여 단일 건의

안을 작성,국회·보사부 등 관련기관에 재건의키로 하다.

3. 정부자원 차관자금 조건 완화방안

국민의료시설 확충 정책에 의한 정부지원 차관자금을 환율변동에 따라 차관자금이 이자 부담률이 증가되어 외자 차관병원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차관자금으로 도입하는 의료장비의 통관세면제, 조작비 정부지원 조치 등으로 병원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보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행이사회에 보고키로 하다.

4. '86년도 주요 사업방향 검토 모색

'86년도 주요사업으로 26개 항목의 계속사업과 15개 항목의 신규사업으로 보고함에 이 사업방향에 동의하고 아래 사항을 착안 또는 보완하여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하다.

가.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이므로 상속세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과 병행하여 의료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추진키로 하다.

나. 병원 관련자료의 전산화

병원 표준화 및 수련업무 등 조사자료의 마이크로필름화는 컴퓨터 전산화가 보다 경제적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산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다.

다. 의료제도 연구를 위한 상설연구기구 설치 운영

박 이갑 총무이사께서 제의한 사업계획중 병원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병원계에 유리한 정책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연구기구를 본회에 상설로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처럼 본회 연구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연구소 등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몇몇 인사를 자문역으로 참여시켜 연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차기 실행이사회에서 재론키로 하다.

제37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6. 1. 31(금) 08 : 00~09 : 35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의료보험 세미나 개최시기 조정

이 세미나의 주제강연자로 선정한 보사부 사회보험국장이 「의료 보장 확대와 국민의료 향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병협에서 주관할 성질이 못되며, 개최시기도 2월은 촉박하여 4월이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연자 수락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주제발표자를 본회 자체 인사로 조정하더라도 이 세미나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개최 시기는 집행부에 위임 재조정하기로 하다.

2. 직종 의료보험 진료비 적체 대책

직종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적체가 의원급보다 본회 회원병원이 더 심각한 상황에 있으나 의협측이 이미 진료비에 대한 공동대책을 '86년 4월말까지 유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는 전국 병원의 적체실태를 파악해서 의료보험연구위원회에 상정 검토후 필요한 대책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키로 하다.

3. 의료법인 증여세와 관련한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에 있어서 학교법인 등에 준하여 비의료인이나 특수관계자를 1/3 범위내로 허용하는 문제를 토의하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증여세 유보에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겠으나 이 법의 당초 취지가 의료인의 권익보호에도 있기 때문에 의협의 의견도 조회하고 실행이사진에서도 검토하여 차기 실행이사회에 재상정 토의키로 하다.

제38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6. 2. 7(금) 08 : 00~09 : 3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협약가 개선에 관한 본회의견 제시

협약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의 최저구입가를 기준한 협약가(안)은 의료기관의 평균구입가에도 훨씬 미달될 뿐만아니라 재료의 손폐량, 저장 및 관리 등 간접비용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최저가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본회에서 조사한 재료를 토대로 회원병원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본회 의견을 제시, 관철시켜 나가기로하다.

2. 병원 소득표준율 대책

금년도 병원세무조사 면제기준 「일반수입의 최저 신장률을 전년도 대비 10% 이상」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조사를 면제받기 위해 부득이 일반세무서의 종용대로 신고를한 실정에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금년5월에 과세될 소득표준율만이라도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다.

3. 의료법인 증여세와 관련한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유보

정부당국의 의료법인 증여세 부과문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유보가 예상되므로 관련기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처키로 하되 본회의 이 법 개정(안) 건의는 일단 유보키로 하다.

(승인사항).

1. '86년도 전공의 후기전형병원 재추가모집

전공의 후기전형병원은 대부분 군소병원으로 전기병원에서 전공의를 추가모집할 경우 잔여인원의 후기병원 응시기피와 후기병원들이 전기병원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후기병원 보호를 위하여 최초방침대로 후기병원에만 전공의 재추가모집을 승인키로 하다.

2. 이사보선

병원장 보직변경에 따른 김 교명(전 한림대학부속 한강성심병원장) 및 은 홍배(전 전북의대부속병원장)의 후임에는 관례에 따라 윤 대원 한림대학부속병원장 및 안 득수 전북의대부속병원장을 각각 선임키로 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인받기로 하다.

제39차 實行理事會

○일시 : 1986. 2. 14(금) 17 : 00 - 17 : 30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1. 협약가 계속 추진

협약가를 설정함에 있어서 보험자단체가 가중평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회원병원이 도저히 구입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본회의 처음 주장이었던 산술평균에 의한 협약가를 설정토록 계속 관심을 갖고 해 나가기로 하다.

2. 병협, 의협 합동 워크샵 본회안 검토

본회와 의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병원표준화 및 수련업무 발전 워크샵에서 토의될 주제, 병원신임 연한 연장, 대학병원 인정범위 및 정원책정기준(N - X)에 대해서 사전에 본회안을 마련토록 하되, 특히 N - X 적용 기준은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으므로 진료실적 및 인건비 부담 등 모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몇가지 대안을가지고 차기실행이사회에서 재검토키로 하다.

3. 병원회보 편집방향 설문조사

병원회보를 발간함에 있어 병원계의 관심과 여망을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다.

4. 농협진료기관 지정 확대 요청에 관한 대책

농협의 진료비대 지급제 진료기관을 대도시 지역까지 전국규모로 확대할 경우 환자의 대도시 집중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재 농협과 지정병원으로 계약된 대부분의 농어촌지역병원(종합 57, 병원 116)의 이용환자들마저 대도시 대학병원을 선호하여 유출됨으로써 농어촌지역 병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회로서는 일단 전국 규모 확대 조치는 유보하고 농어촌지역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기관 지정계약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본회의견을 농협에 회신해 주기로 하다.